



**CDTFA**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 캘리포니아주 판매자 허가증(California Seller's Permit)

**판매세 및 사용세 법률에 따른 권리와 책임**



캘리포니아주 조세·수수료관리국(CDTFA)

## 국장의 메시지

캘리포니아주 조세·수수료관리국(CDTFA)에 등록된 백만 개 이상의 사업체의 일원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판매자는 CDTFA에 정기적으로 세금을 신고해야 하며, 판매세 및 사용세법에 따른 책임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CDTFA 웹사이트([www.cdtfa.ca.gov](http://www.cdtfa.ca.gov))는 풍부한 정보와 모든 질문에 대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또한 전자 납세 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가 지원됩니다([17페이지](#) 참조). CDTFA 직원도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800-400-7115(문자 전송:711)로 전화하여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거나 지역 CDTFA 사무소에 방문하여 문의하십시오([30페이지](#) 참조)

귀사의 성공을 기원하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안도 언제든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icolas Maduros  
국장  
캘리포니아주  
조세·수수료관리국 (CDTFA)

CDTFA의 사명은 필수 공공 서비스를 지원하는 조세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징수하여 캘리포니아주 주민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 목차

챕터	페이지
판매자 허가증 취득	4
판매 및 구매 시 세금 적용	9
세금 신고	13
온라인 서비스	18
사업의 인수, 매각 또는 중단	20
재판매 증명서 사용	22
기록 보관	24
추가 정보	28

---

참고: 본 간행물은 표지에 명시된 간행물 작성 시점에 유효한 법률 및 규정을 요약하여 제시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 법률 또는 규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간행물의 내용과 법률 또는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 결정은 법률에 근거하며 본 간행물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 판매자 허가증 취득

## 판매자 허가증 취득 대상

다음의 경우 판매자 허가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 소매점에서 판매 시 일반적으로 판매세가 부과되는 개인 유형자산을 판매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

판매자 허가증 취득 요건은 다음 대상에 적용됩니다.

- 기업
- 개인
- 유한책임회사(LLC: Limited Liability Companies)
- 유한책임조합(LLP: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 합자조합(LP: Limited Partnerships)
- 동업(Partnerships)
- 부부 공동소유(Married Co-ownerships)
- 등록된 동거 관계(Registered Domestic Partnerships)
- 단체

도매업체와 소매업체 모두 허가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판매자 허가증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나 중고물품 등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려는 경우엔 임시 판매 허가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시 허가증은 일반적으로 한 장소에서 30일 이하로 진행되는 판매 행위에 대해 발급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www.cdtfa.ca.gov](http://www.cdtfa.ca.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월~금, 오전 7시30분~오후 5시(태평양 표준시, 공휴일 제외) 중 1-800-400-7115(문자 전송:711) 번을 통해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 ‘사업에 종사한다’는 표현의 의미

다음의 경우 캘리포니아주 외부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업에 종사하는 것입니다.

-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영구 또는 임시 사무실, 유통 장소, 판매 장소 또는 견본 진열실, 창고 또는 보관 장소 또는 기타 물리적 사업장을 직간접적으로 또는 자회사 또는 대리인을 통해 유지, 점유 또는 사용하는 경우.
- 판매, 주문, 상품 조립 또는 설치, 고객 교육, 배송 또는 귀하의 제품을 판매할 시장의 기반을 잡거나 그러한 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다른 목적으로 귀하를 대신하거나 귀하의 권한 또는 귀하의 자회사의 권한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대리인, 중개인, 문서 제출자 또는 독립계약자가 있는 경우.
- 기계, 장비 및 가구 대여 등 캘리포니아주에서 개인 자산을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는 경우(자세한 내용은 [Publication 46, Leasing Tangible Personal Property](#)(간행물 46, 개인 유형자산 대여 참조) 또는
- 캘리포니아주의 부동산이나 기계, 장비, 가구 또는 컴퓨터 서버 등의 개인 유형자산을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 2019년 4월 1일부터 직전 연도 혹은 당해 연도에 귀하 및 귀하와 관련된 모든 사람이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판매하거나 캘리포니아주로 배송한 개인 유형자산의 총 합산 매출이 \$500,000를 초과하는 경우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업에 종사하는 것입니다.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267\(b\)](#)절 및 관련 규정에 관계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귀하와 관련된 사람입니다. 2019년 4월 1일 이전에는 캘리포니아주로 배송된 매출을 기준으로 사업 종사자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지역 및 구역의 사용세 징수 요건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온라인 산업 가이드인 [Use Tax Collection Requirements Based on Sales into California Due to the Wayfair Decision](#)(Wayfair 판결로 인한 캘리포니아주 판매 기준 사용세 징수 요건)을 참조하십시오.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판매 행위에 해당하는 다른 활동이 있습니다. 다양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허가증 취득의 필요성 판단 시 CDTFA에 문의하십시오.

## ‘일반적으로 판매세가 부과되는’이라는 표현의 의미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개인 유형자산의 소매 판매 시 판매세가 부과됩니다. 개인 유형자산의 예시로는 가구, 가정용품, 따뜻한 식품, 장난감, 골동품 및 의류 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서비스 및 인건비도 개인 유형자산 판매의 일부인 경우 과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고객을 위해 반지를 제작하는 경우 유형의 개인자산을 제작하는 행위이므로 반지 가격으로 청구되는 총 금액(인건비 포함)이 과세 대상입니다. 반지 제작을 위한 재료를 고객이 제공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수리(예: 다이아몬드 리세팅)에 인건비를 지불해도 개인 유형자산이 제작되는 것은 아니므로 인건비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기존 자산의 수리나 수선 작업에 불과할 뿐입니다.

판매된 자산의 설치 또는 적용을 위한 인건비는 일반적으로 판매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참고: 인건비는 청구서에 별도로 기재되어야 합니다.([Publication 108, Labor Charges](#)(간행물 108-K, 인건비)를 참조하세요. 자세한 정보 확인하기).

과세 대상 품목의 판단 시 적용되는 다양한 규정이 있습니다. 사업의 과세 대상 품목과 관련한 정보는 1-800-400-7115(문자 전송:711)를 통해 고객 서비스 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 유형에 따라 적합한 간행물을 주문하거나 법률이 자세히 설명된 규정집 사본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 부문과 관련한 주요한 세금 문제를 자세히 알아보려면 CDTFA 웹사이트([www.cdtfa.ca.gov](http://www.cdtfa.ca.gov))에서 [산업 세금 가이드 웹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허가증은 어떻게 신청합니까?

허가증, 면허 또는 계정을 온라인으로 등록하려면 [www.cdtfa.ca.gov](http://www.cdtfa.ca.gov)에서 [Permits & Licenses\(허가증 및 면허\)](#) 섹션을 선택하십시오. 온라인 등록은 CDTFA 사무소에서도 지원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1-800-400-7115(TTY:711) 번으로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세요.

## 허가증 신청 시 어떤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까?

온라인 등록 과정에서 신청하는 허가증, 면허 또는 계정 유형에 따라 특정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단 목록은 등록 시작 전 필요할 수 있는 일반적 정보입니다.

- 사회보장번호(기업 임원 제외).
- 운전면허증 또는 주 신분증 번호. 참고: 허용되는 다른 형식의 신분증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미국 여권, 미군 신분증, 영사 신분증 또는 비자(E-2).
- 이메일 주소(담당자 및 비즈니스).
- 연방 고용주 식별번호(FEIN).
- 주 고용주 식별번호(SEIN).
- 기업: 기업 이름, 기업 번호, 주 및 설립일.
- 동업자, 기업 임원, 사원 또는 관리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인 추천인의 이름 및 전화번호.
- 공급업체 이름 및 주소.
- 북미 산업분류체계(NAICS) 코드.

- 표준산업분류(SIC).
- 은행 정보(이름 및 주소).
- 가맹점 신용카드 결제 처리업체의 이름 및 계좌번호.
- 장부와 기록 관리인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 계정 관련 정보는 공개 대상입니까?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주법이 귀하의 기록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일부 상황에서는 판매자 허가증에 인쇄된 정보, 계정 시작일 및 종료일, 사업주 또는 동업자 이름이 대중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CDTFA는 일부 주 기관 또는 연방 기관, 지방정부 및 이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민간기업에 계정 관련 정보를 공유하거나 사업체 매각 시 매수자 또는 기타 관련 당사자에게 체납 세액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 귀하의 회계사, 변호사 또는 지정된 타인에게 계정 관련 정보가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 허가증을 1개 이상 취득해야 합니까?

(다른 주소지에 위치한) 사업장이 2곳 이상인 경우, 각 사업장별로 허가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사업장에 적용되는 통합 허가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통합 허가증에는 사업장별로 발급된 허가증이 포함됩니다. 허가증 신청할 때 모든 사업장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캘리포니아주에 상품 재고만 보관하는 경우에도 허가증이 필요합니까?

모든 판매가 주간 또는 해외 상거래로 발생하는 경우 판매자 허가증을 소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주와 다른 주에서 판매가 발생할 경우 캘리포니아주 내 상품 재고 보관 시 허가증을 1개 이상 소지해야 합니다. 또한 배송 또는 판매 이행을 위해 캘리포니아주의 창고 또는 기타 장소에 상품을 보관하는 경우 그에 대한 허가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상품이 캘리포니아주 외부에서 발생한 판매를 이행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판매자 허가증에 수수료가 부과됩니까?

아니오. 허가증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단, 일부 상황에서 보증금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CDTFA에서 보증금을 요구하는 상황은 언제입니까?

법적으로 보증금이 요구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판매자 허가증 신청 시 보증금은 불필요합니다. 단, 허가증이 취소되거나 미납 이력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 상황에서 보증금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도 판매자 허가증을 유지해야 합니까?

아니오. 허가증은 판매자로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종사하는 동안에만 유효합니다. 판매자로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즉시 CDTFA에 문의하여 허가증을 취소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의 인수, 매각 또는 중단 챕터를 참조하십시오](#). 판매자로서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허가증이 취소됩니다.

## 사업장, 우편 또는 이메일 주소 변경 시 CDTFA에 고지해야 합니까?

예. 기록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변경을 위해 고객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거나 [CDTFA 사무소](#) 중 한 곳을 방문하십시오.

## **사업체의 소유권 변경 시 CDTFA에 고지해야 합니까?**

예. 사업체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CDTFA에 직접 고지해야 합니다. [26페이지](#)의 설명과 같이 소유권 기록이 최신 상태로 유지되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이전 소유자가 매각 후 사업체의 세금, 이자 및 과징금에 대한 책임을 갖습니다.

사업체를 통합하거나 동업 관계 또는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경우 소유권 변경으로 간주되며, 이는 보고 대상입니다. 소유권 변경 관련 사항은 CDTFA에 직접 고지해야 합니다. 해당 정보를 신문에 게재하거나 다른 주정부 기관에 보고해도 CDTFA에 대한 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또한 동업자 추가 또는 해지 시에는 즉시 CDTFA에 고지해야 합니다. 적시에 고지하면 동업 관계 해지 후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세금, 과징금 및 이자 비용에 대해 사업체를 떠나는 동업자의 개인적 책임을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또는 등록된 동거인과 공동으로 판매자 허가증을 소유하였으나 이혼, 법적 별거를 시작하고 사업체가 상대방에게 양도된 경우 CDTFA에 고지해야 합니까?**

예. 소유권 변경과 동일한 사례로 간주되는 보고 대상입니다. 귀하가 사업 운영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지 않고 한 사람에게 사업체를 증여하는 법적 별거 또는 이혼 판결은 고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 **판매자 허가증은 영업 허가증과 동일합니까?**

아니오. 별도의 영업 허가증을 취득하려면 지역 영업 허가증 담당 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 **다른 세금이나 수수료 납부를 위해 등록이 필요합니까?**

CDTFA에서 관리하는 기타 세금 및 수수료 프로그램([28페이지](#)에서 시작) 관련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다른 주, 연방, 지방 세무 및 면허 발급 기관의 등록 요건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 세무국 (Franchise Tax Board, [www.ftb.ca.gov](http://www.ftb.ca.gov)) 또는 고용개발부(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www.edd.ca.gov](http://www.edd.ca.gov))에 등록이 필요한지 확인하십시오. [캘리포니아주 환경보호국\(Californi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www.calgold.ca.gov\)](#)은 주, 지역 및 연방 허가증 요건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른 주의 법인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업을 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출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www.sos.ca.gov](http://www.sos.ca.gov)의 캘리포니아주 주무장관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또한 법인의 최소 프랜차이즈 세에 대한 정보는 [www.taxes.ca.gov](http://www.taxes.ca.gov)에 있는 캘리포니아주 세무 서비스 센터를 참조하세요.

## **사업 기록은 감사 대상입니까?**

예. CDTFA는 정확한 납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록에 대한 감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보존해야 할 기록 유형과 보존 기간은 [기록 보관\(Keeping Records\)](#) 참조). 감사를 통해 납부할 세금이 있는지, 환급 자격을 충족하는지, 정확한 금액을 납부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년 간격으로, 허가증 폐기 시 또는 보유한 다른 허가증의 감사 시 함께 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 정보원을 통해 수집된 정보로 인해 감사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 허가증 소지자로서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허가증 소지자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 판매세 및 사용세의 신고 및 납부.
- 적절한 기록 보관.

다음의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사업장 또는 우편주소 변경.
- 사업체 소유권 변경.
- 사업체 매각.
- 사업체 인수.
- 사업 중단.

CDTFA에서 점점 더 많은 업무가 전자적으로 처리되므로, 사업체 이메일 주소 변경 시에도 고지해야 합니다.



## 판매 및 구매 시 세금 적용

소매업체는 판매세 및 사용세를 납부하고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 챕터는 해당 의무와 관련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판매세 및 사용세 세금 신고서 제출 방식에 대한 설명은 [세금 신고](#) 챕터를 참조하십시오. 세금 자문은 서면으로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과세 대상

첫 번째 챕터인 [판매자 허가증 취득](#)에 명시된 바와 같이, 캘리포니아주에서 개인 유형자산의 소매 판매 시 일반적으로 판매세가 부과됩니다. 개인 유형자산의 예시로는 가구, 가정용품, 장난감, 골동품 및 의류 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서비스 및 인건비도 개인 유형자산 판매의 일부인 경우 판매세가 부과됩니다.

소매업체는 판매세가 아닌 사용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용세가 적용되는 구매의 가장 일반적인 예시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용을 위해 타주 소매업체의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업에 종사하는 타주 소매업체는 적절한 경우 판매 시점에 소비자로부터 사용세를 징수해야 합니다(사용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16페이지](#) 참조).

판매세율과 사용세의 세율은 동일합니다.

일부 판매 및 구매의 경우 판매세 및 사용세 면세 대상입니다. 면세 판매의 예시로는 사람이 소비하는 특정 식품의 판매,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 판매, 처방약 판매 등이 있습니다. 면세 판매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61, Sales and Use Taxes: Exemptions and Exclusions](#) (간행물 61, 판매세 및 사용세: 면세 및 제외)를 참조하십시오. 간행물은 웹사이트([www.cdtfa.ca.gov](http://www.cdtfa.ca.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CDTFA에 판매세를 납부해야 할 책임은 누구에게 귀속됩니까?

판매자는 올바른 금액의 판매세를 CDTFA에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납세액이 올바르지 않을 경우 추가 과세액, 과징금 및 이자가 부과됩니다.

### 고객으로부터 판매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까?

예. 판매세를 납부하고 CDTFA에 보고해야 하지만, 판매로 인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고객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매 시 \$1.75의 판매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해당 판매의 일부로 합의된 경우 해당 세액을 고객에게 전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고객이 세금에 해당하는 추가 금액을 지불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판매세 환급액이 영수증이나 청구서에 별도로 기재된 경우.
- 판매세에 해당하는 금액이 모든 과세 상품의 가격에 추가된다는 내용을 표지판에 적어 시설 내에 게시하거나 가격표, 광고 자료 및 구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타 인쇄물에 이와 유사한 내용을 기재한 경우.
- 판매세 환급액이 추가될 것임을 판매 계약서에 특별히 명시한 경우.

판매세 환급액을 청구서나 영수증에서 별도의 항목으로 기재하지 않고 가격에 포함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세금이 포함되어 있음을 고지해야 합니다. 해당 정보를 시설 내에서 구매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거나, 가격표나 광고물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구 중 하나를 사용하십시오.

- “All prices of taxable items include sales tax reimbursement computed to the nearest mill(모든 과세 대상 품목의 가격에는 가장 근접한 밀(mill) 단위까지 계산된 판매세 환급액이 포함됩니다).”
- “The price of this item includes sales tax reimbursement computed to the nearest mill(이 품목의 가격에는 가장 근접한 밀(mill) 단위까지 계산된 판매세 환급금이 포함됩니다).”

## 어떤 세율이 적용됩니까?

판매세 및 사용세의 세율은 주 전역에서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역에 적용되는 기본 세율은 2017년 1월 1일 기준 7.25%입니다. 그러나 이 세율은 유권자가 추가 지방세를 승인한 지역(특별 과세 구역)에서 더 높습니다. 이러한 구역 중 다수에는 카운티 전역이 포함되지만, 일부 구역은 도시 한 곳으로 제한됩니다. 지방세는 교통, 도서관 등 특별 서비스에 사용되거나 일반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시:

- 나파(Napa) 카운티의 세율은 7.75%로, 캘리포니아주 기본 세율 7.25%에 나파 카운티 홍수 방지 위원회(Napa County Flood Protection Authority)의 세금 0.50%를 더한 값입니다. 카운티 전역에서 7.7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콜루사(Colusa) 카운티에 위치한 월리엄스시의 세율은 7.75%로, 캘리포니아주 기본 세율 7.25%에 월리엄스시의 거래세 및 사용세 0.50%를 더한 값입니다. 월리엄스시에서만 제한적으로 7.7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콜루사 카운티 지역에서 월리엄스시 외 지역의 세율은 7.25%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모든 사업체 중 3/4 이상이 특별 과세 구역에 위치하거나 해당 구역에서 영업합니다.

## 상기 설명에 따른 특별 과세 구역에 적용되는 지방세의 신고 및 납부 대상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음과 같은 경우 판매자는 과세 판매 및 대여에 대한 지역 판매세(거래세) 또는 사용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해당 구역에 사업장이 있거나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 해당 구역에서 사용되는 개인 유형자산을 대여하는 경우.
- 구역에 등록될 예정인 차량, 미등록 선박 또는 항공기를 판매 또는 대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소매업체는 해당 지역에서 사업에 종사하는 것입니다.

- 해당 구역에 있는 영구 또는 임시 사무실, 유통 장소, 판매 장소 또는 견본 진열실, 창고 또는 보관 장소 또는 기타 물리적 사업장을 직간접적으로 또는 자회사 또는 대리인을 통해 유지, 점유 또는 사용하는 경우.
- 판매, 주문, 상품 조립 또는 설치, 고객 교육, 배송 또는 귀하의 제품을 판매할 시장의 기반을 잡거나 그러한 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다른 목적으로 귀하를 대신하거나 귀하의 권한 또는 귀하의 자회사의 권한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대리인, 중개인, 외판원 또는 독립 계약업체가 있는 경우.
- 해당 구역에 있는 기계, 장비 및 가구 대여 등 개인 자산을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는 경우.
- 해당 구역에 있는 부동산이나 기계, 장비, 가구 또는 컴퓨터 서버 등의 개인 유형자산을 소유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 구역에 등록될 예정인 차량, 미등록 선박을 판매 또는 대여하는 경우.

캘리포니아주, 지역 및 구역의 사용세 징수 요건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온라인 산업 가이드인 [Use Tax Collection Requirements Based on Sales into California Due to the Wayfair Decision](#)(Wayfair 판결로 인한 캘리포니아주 판매 기준 사용세 징수 요건)을 참조하십시오.

특별 구역의 납세에 적용되는 규정과 일반 판매세 및 사용세 납세에 적용되는 규정 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ublication 44](#), District Taxes (간행물 44, 지방세)를 참조하십시오. 해당 간행물은 [www.cdtfa.ca.gov](http://www.cdtfa.ca.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 또는 대여에 대한 특별 지방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현재 7.25%인 캘리포니아주 기본 세율로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 특별 과세 구역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 CDTFA 웹사이트([www.cdtfa.ca.gov](http://www.cdtfa.ca.gov))에 방문하여 *Tax & Fee Rates(세율 및 수수료)*를 클릭하십시오.
- 정규 업무 시간 중에 고객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 고객에게 세금을 과다 징수한 경우

세금을 과다 징수한 경우 초과 금액을 고객에게 반환하거나 CDTFA에 납부해야 합니다.

## 물물교환 및 교환은 과세 대상입니까?

예. 물물교환 또는 교환은 판매세 및 사용세법에 따른 판매 또는 구매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은 받은 자산이나 서비스의 공정시장가치에 따라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체가 치과 치료비로 \$500의 대금을 빚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현금을 지불하는 대신 재고의 텔레비전으로 치과 치료비를 전액을 납부합니다. 이 거래는 과세 대상 TV 판매로 간주되며, \$500를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보상 판매는 과세 대상입니까?

예. 보상 판매액은 과세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20,000에 판매하고 \$4,000 상당의 보상 판매액을 결제 대금의 일부로 받은 경우, 판매 가격인 \$20,000를 기준으로 과세액이 결정됩니다(즉, 판매세 계산 시 판매된 차량의 가격에서 보상 판매액을 차감할 수 없습니다).

## 배송료 및 취급 수수료는 과세 대상입니까?

### 배송료

일반 배송업체, 미국 우정공사(USPS) 또는 독립 계약업체를 통해 자산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합니다.

청구서 또는 기타 판매 계산서에 별도의 항목으로 배달료가 명시된 경우 이러한 조건의 배송료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배송료가 별도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과세 대상입니다.

예시: 냉장고를 판매하고 독립 계약 배송업체를 통해 배달합니다. 청구서에 냉장고 가격 \$750와 배송료 \$50(배송업체의 청구 금액)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배송료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냉장고 가격(\$750)에만 세금이 적용됩니다. 청구서에 \$800로 단일 요금이 기재된 경우 전체 금액에 세금이 적용됩니다.

참고: 실제 비용보다 배송료를 더 많이 청구하는 경우 추가된 금액은 과세 대상입니다. 상기 예시에서 고객에게 배송료로 \$60를 청구했지만 실제 배송료는 \$50(독립 계약 배송업체에서 청구한 금액)인 경우 추가된 \$10에 세금이 적용됩니다.

### 배송 시 개인 차량을 사용한 경우

청구서의 세금 별도 기재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배송료에 세금이 적용됩니다(다음 페이지의 참고 확인).

예시: 냉장고를 판매하고 개인 차량을 사용하여 고객에게 배달합니다. 청구서에 냉장고 가격 \$750와 배송료 \$50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세금은 배송료와 냉장고 가격에 적용됩니다.

참고: 배송에 앞서 자산의 소유권을 구매자에게 이전하는 서면 판매 계약이 배송 전에 서명된 경우, 판매자의 차량을 사용하여 이루어진 배송료에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취급 수수료

취급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 합산 요금

배송 및 취급에 대한 단일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예: 청구서에 ‘우송료 및 취급 수수료’ 또는 ‘배송료 및 취급 수수료’ 명목으로 단일 금액이 표시됨), 취급 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반면 배송료 부분은 과세 대상이거나 과세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이전 페이지의 배송료 참조).

참고: 청구서에 배송(delivery), 배달(shipping) 또는 우송료(postage)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배송료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별도로 기재된 금액에 취급(handling)만 표시된 경우 해당 금액은 배송료로 간주되지 않으며 전체 취급 수수료가 과세 대상입니다(포장에 우송료 또는 배송료가 표시된 경우 포함).

배송료와 관련한 상세한 정보나 특정 거래에 세금이 적용되는 방식은 고객 서비스 센터로 문의하십시오. 또한 [규정 1628 운송료\(Transportation Charges\)](#), 또는 [Publication 100 배달 및 배송료\(간행물 100-K, Shipping and Delivery Charges\)](#)의 사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저는 타주 소매업체를 대신하여 드랍ши핑(drop shipment)을 제공합니다. 판매세를 납부해야 합니까?

타주 소매업체를 위해 캘리포니아주의 고객에게 드랍ши핑으로 물품을 전달하는 경우, 해당 소매업체가 유효한 캘리포니아주 판매자 허가증 또는 사용세 등록 증명서(Certificate of Registration-Use Tax)를 소지한다면 타주 소매업체에 대한 판매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타주 소매업체는 캘리포니아주 고객에게 물품을 판매한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타주 소매업체가 두 가지 유형의 허가증 중 어느 것도 소지하지 않으며 해당 자산의 소매 판매가 캘리포니아주 판매세 또는 사용세 적용 대상인 경우, 드랍ши핑 제공업체에서 해당 세금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품목의 소매 판매 가격은 다음 중 하나입니다.

- 타주 소매업체가 캘리포니아주의 고객에게 청구한 금액.
- 타주 소매업체에 청구한 금액에 10%의 이익을 가산한 금액.

캘리포니아주 고객이 재판매를 위해 자산을 구매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유효한 캘리포니아 재판매 증명서를 받아 기록으로 보관하면 판매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 외화로 결제되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세금은 판매일 현재의 외화 환율을 기준으로 미국 달러로 계산됩니다.

## 추가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웹사이트, 강의, 양식 및 간행물 등의 다른 자료를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일부 간행물은 다국어 번역본이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 판매세 및 사용세 신고서는 무엇입니까?

판매 및 사용세 신고서는 판매자 허가증 소지자가 CDTFA에 판매세 및 사용세 납부를 신고하는 데 사용됩니다. 허가증 소지자는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된 공제 유형에 따라 일부 업체는 CDTFA-401-EZ, 약식 - 판매세 및 사용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언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판매자 허가증 취득 시 월별, 분기별 또는 연간 보고 기준에 따라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안내를 받습니다.

세금 신고서 제출 기한은 각 보고기간말 이후입니다. 즉, 보고 기간이 6월 30일에 끝나는 경우 세금 신고 및 납부 마감일은 다음 달 말일인 7월 31일입니다. 신고 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법정 공휴일인 경우 신고서 제출 기한은 그 다음 영업일입니다.

온라인, 우편 또는 직접 제출 방식으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 납부 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서 또는 안내 서류를 받지 못하더라도 세금 신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기한을 경과하여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세금이 체납된 경우 어떻게 됩니까?

기한을 경과하여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세금이 체납된 경우 이자와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을 적시에 전액 납부하였으나,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한 경과 신고서 제출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CDTFA 웹사이트의 [Publication 75 Interest, Penalties and Fees](#) (간행물 75, 이자, 벌금 및 수수료)를 참조하거나 고객 서비스 센터로 전화하여 문의하세요.

제한적으로 신고서 제출 기간이 최대 1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기간 연장이 허용되어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할 경우 세액의 이자도 납부해야 하지만, 과태료는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CDTFA 웹사이트에 방문하여 [세금 신고서 제출 기간 연장\(Extension of Time to File a Tax Return\)](#) 요청을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예. 보고 기간에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해당 기간의 매출이 없는 경우 혹은 모든 매출이 비과세인 경우에도 세금 신고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 매출 총액에는 어떤 판매 유형이 포함됩니까?

법률에 따라 자산 판매 대금의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 유형자산의 판매를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판매 대금은 금전(예: 현금 및 외상매출)의 형식으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다른 형식(예: 자산 교환)으로 대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 해당 결제액의 공정 시장 가치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 판매로 인해 수령한 대금은 매출 총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캘리포니아주 복권 판매(스크래치, 로또 등)
- 우편환 서비스 요금
- 상품권 판매(다음 페이지의 참고 확인)
- 전자기기 폐기(eWaste) 수수료

이전 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다른 기간에 대금이 지급되더라도, 판매가 발생한 세금 보고 기간의 판매를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월에 상품이 \$500에 외상으로 판매되었고 고객이 상품을 즉시 인수했습니다. 고객이 6월에 상품을 인수했으므로(판매 발생) 미지급 잔액의 지급 시기와 무관하게 \$500 판매는 6월의 판매 내역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상품권. 매출 총액에 상품권 판매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과세 상품 또는 자산 판매 시 상품권을 수령할 때 발생하는 판매는 신고 대상입니다. 해당 판매는 상품권이 사용된 보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 어떤 경우에 구매 시 사용세가 부과됩니까?

구매 시 다양한 사유로 사용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판매 증명서를 제공하고 구매한 자산을 사용한 경우. [재판매 증명서 사용](#) 챕터에 설명된 바와 같이, 재판매 증명서를 사용하여 재판매할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공급업체는 판매세 환급액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단, 재판매가 발생하기 전 다른 용도로 해당 상품을 사용한 경우, 그 사용 시점에 사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판매가 발생하기 전 진열 또는 시연 목적으로 한 상품 사용은 일반적으로 사용세의 과세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타주 소매업체를 통해 구매한 자산을 사용한 경우.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에 세금을 내지 않고 타주 소매업체로부터 장비나 상품을 구매하여 재판매 외의 목적으로 해당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구매에 대한 사용세가 부과되며 이는 세금 신고 대상입니다.

참고: 사용세는 대여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여와 관련한 정보는 CDTFA 웹사이트의 [Publication 46 Leasing Tangible Personal Property in California](#) (간행물 46, 캘리포니아주에서 개인 유형자산 대여)를 참조하거나 [고객 서비스 센터](#)로 전화하여 문의하십시오.

## 납부할 사용세는 어떻게 신고합니까?

### 개인

캘리포니아주 1년에 한 번 소득세 신고 시 납부하거나, CDTFA 웹사이트 [www.cdtfa.ca.gov](http://www.cdtfa.ca.gov)에서 온라인 등록을 통해 구매 시마다 CDTFA에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딜러가 아닌 사람에게서 차량이나 선박을 구매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주에서 해당 재산 사용을 등록할 때 DMV에 사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사업

캘리포니아주의 판매세 또는 사용세 허가증을 소지한 사업주는 세금 신고 시 사업상 구매와 관련된 사용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을 갖춘 구매자"는 CDTFA에 등록해야 하며 수익 및 과세법 [6225항](#)에 따라 CDTFA에 직접 등록하고 사용세를 매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판매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현재 사용세 목적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자격을 갖춘 구매자"로 등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자격을 갖춘 구매자"는 연간 사업 운영을 통해 최소 \$100,000의 총 수입액이 있고 CDTFA에 등록할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정의되었습니다. 총 수입액은 주 내 및 주 외 사업 운영에서 발생한 모든 수입의 총액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자격을 갖춘 구매자"의 정의가 개정\*되어 해당 구매자가 사업 운영을 통해 연간 총 수입액이 최소 \$100,000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삭제되었습니다. 대신 해당 구매에 부과된 사용세가 이 주에서 사업에 종사하는 소매업체 또는 세금 징수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경우 사용세가 적용되는 구매(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 제외)액이 역년 기준으로 연간 \$10,00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변경 사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2029년 1월 1일부터 "자격을 갖춘 구매자"에 대한 정의는 사업 운영을 통한 연간 총 수입액이 최소 \$100,000인 사람으로 환원됩니다.

CDTFA 웹사이트 [www.cdtfa.ca.gov](http://www.cdtfa.ca.gov)에서 [허가 등록](#) 아래 온라인 등록을 선택한 후 새로운 사업 활동 등록을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일단 등록을 하면 신고서 제출 이후에 납부해야 할 사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등록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면 고객 서비스 센터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CDTFA 사무소](#)를 방문하세요. 자세한 정보는 CDTFA 웹사이트의 [Publication 126, Mandatory Use Tax Registration for Service Enterprises](#)(간행물 126, 서비스 기업의 사용세 등록 의무화)를 참조하십시오.

\*참조 [의회 법안 1097 \(연방법 2023, 355 장\)](#).

참고: 타주 소매업체로부터의 구매. 일부 타주 소매업체는 사용세 등록 증명서(Certificate of Registration—Use Tax)를 소지합니다. 이러한 소매업체가 캘리포니아주 고객을 대상으로 과세 판매를 한 경우, 캘리포니아주 사용세를 징수하여 신고합니다. 해당 소매업체에 캘리포니아주 사용세를 납부한 경우 세금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소매업체는 다른 서류와 함께 징수된 사용세 금액이 표시된 영수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사용세 납부 내역이 표시된 영수증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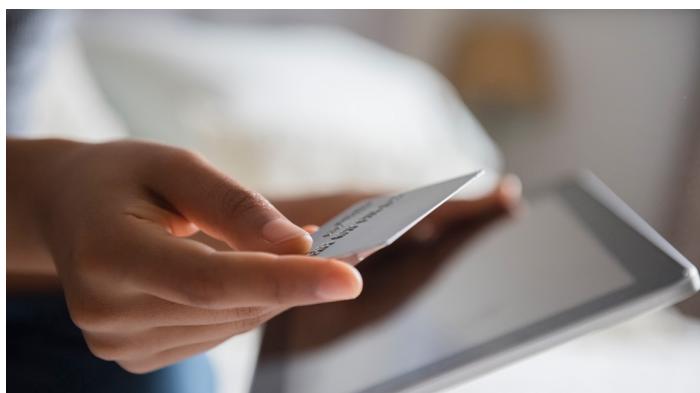
해당 상품과 관련한 타주의 판매세 또는 사용세를 적절히 납부했으며 세금 신고서에 구매 금액을 신고한 경우, 세금 신고 시 해당 주에 납부한 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캘리포니아주에 납부해야 할 세액까지). 단, 해당 자산을 재판매할 경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납부 세액은 어떻게 결제합니까?

다음과 같이 세금 납부를 위한 몇 가지 간편하고 편리한 결제 옵션이 있습니다.

- 은행 계좌에서 직접 결제. 온라인으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한 후 은행 라우팅 번호와 은행 계좌 번호를 입력하여 귀하의 계좌에서 CDTFA 계좌로 자금을 직접 이체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또는 예납 기한까지 선택한 은행 영업일만큼 결제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허용되는 신용카드는 American Express®, Discover®, MasterCard® 및 Visa®입니다. 결제 청구 관련 지침은 당사 웹사이트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 Do I(방법) -> Make a Payment(결제)*를 차례로 선택하십시오.
- 수표 또는 우편환. 우편이나 사무소를 통한 결제도 가능합니다. 우편으로 현금을 발송하지 마십시오. 수표나 우편환의 경우 수취인을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직접 방문 결제 시 납부 마감일 당일 또는 전까지 사무소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우편을 통해 발송된 결제 수단의 경우 우편 소인에 납부 마감일 당일 또는 그 이전의 날짜가 찍혀 있어야 합니다.
- 전자송금(EFT). 현재 월 평균 \$10,000의 판매 및 사용세를 납부하는 기업은 EFT 결제가 필수입니다. 다른 사업체는 원하는 경우 전자송금(EFT) 결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자송금(EFT) 결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CDTFA 웹사이트([www.cdtfa.ca.gov](http://www.cdtfa.ca.gov))에 방문하여 드롭다운 메뉴에서 *How Do I(방법) -> Make a Payment(결제)*를 차례로 선택하십시오.
- CDTFA ePay 모바일 앱. CDTFA ePay 앱은 모바일 기기에서 전자 결제를 관리하는 간편한 방법입니다. 은행 직불카드나 신용카드를 통해 CDTFA 계정에 대한 전자 결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 결제 수단과 무관하게 적시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달러 단위로 반올림해야 합니까?

예. 세금 신고서에서 달러 단위로 반올림할 수 있습니다. 50센트 미만의 금액은 절하하여 달러 단위로 반올림하고, 50센트 이상의 금액은 절상하여 달러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예를 들어, \$127.49는 \$127.00로, \$127.50은 \$128.00로 반올림합니다.

## 매출 축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및 장치

매출을 숨기거나 제거하고 기록을 위조하는 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고의로 판매, 구매, 설치, 양도 또는 소유할 경우 범죄에 해당합니다.

해당 장치를 사용하면 법률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세금과 수수료를 납부하는 사업주에 비해 불공정한 경쟁우위를 갖게 됩니다. 위반 시 최대 3년의 카운티 교도소 징역형 및 최대 \$10,000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모든 불법 미납 세금 및 벌금, 관련 이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CDTFA에서 연락을 취하여 필요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판매자 허가증이 취소되어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허가증이 취소되었으나 세입 및 조세법(Revenue and Taxation Code)의 [6071절](#) 규정에 따라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경우 경범죄에 해당하며 세입 및 조세법 [7153절](#)에 명시된 바와 같이 \$1,000~\$5,000 사이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벌금형 및 징역형을 모두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 예납 계정이란 무엇입니까?

월 평균 과세 매출이 \$17,000 이상인 사업체는 세금을 예납해야 합니다. 해당 요건이 적용되는 경우 서면 통지문을 받게 됩니다. 서면 승인 없이 세금을 예납하지 마십시오.

## 연료 판매 또는 유통 시 판매세 신고 또는 납부에 적용되는 추가 요건이 있습니까?

특정한 연료를 판매하는 도매업체 또는 공급업체인 경우 연료 유통 과정의 특정 시점에서 판매세의 일부를 미리 징수하여, 'SG' 세금 신고서에 징수한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공급업체에 판매세를 예납한 소매업체 또는 기타 연료 판매자는 판매세 세금 신고서 제출 시 예납된 세금에 대한 공제를 청구하여 해당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ublication 82, Prepaid Sales Tax and Sales of Fuel](#)(간행물 82, 판매세 예납 및 연료 판매)를 참조하거나 고객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여 문의하십시오.



## **고객이 대금을 보고 기간 이후에 지급하거나 분할 지급한 경우, 세금 납부 기한은 언제입니까?**

판매가 발생한 기간(고객이 상품을 인수하거나 상품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규정은 대금 지급이 해당 시점에 이루어지든(예: 현금), 나중에(예: 외상 판매) 이루어지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금 지급 시기와 무관하게 판매가 발생한 기간에 외상 매출을 신고하거나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여료 결제는 다르게 처리됩니다. 과세 대상 대여가 시작된 시기와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대여료를 지급받은 기간에 세금을 신고합니다. 미납된 대여료 잔액은 신고하지 않습니다(트럭, 항공기 및 기타 이동식 운송 장비의 대여 시 다른 규칙 적용).

대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www.cdtfa.ca.gov](http://www.cdtfa.ca.gov))의 규정 1660 일반적인 개인 유형자산 대여(Leases of Tangible Personal Property—In General) 또는 규정 1661 이동식 운송 장비(Leases of Mobile Transportation Equipmen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Publication 46, Leasing Tangible Personal Property in California (간행물 46, 캘리포니아주에서 개인 유형자산 대여)를 확인하거나 고객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매년 세금을 신고합니다. 폐업이나 사업 매각 시 세금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됩니까?**

폐업 시 최종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월 1일~3월 31일 사이에 폐업하는 경우 최종 판매세 및 사용세 신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4월 1일~6월 30일 사이에 폐업하는 경우 신고 기한은 7월 31일입니다. 7월 1일~9월 30일 사이에 폐업하는 경우 신고 기한은 10월 31일입니다. 10월 1일~12월 31일 사이에 폐업하는 경우 1월 31일까지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 또는 사업 매각 시 인근 CDTFA 사무소에 연락하십시오. 최종 판매세 및 사용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서를 적시에 제출하지 않으면 이자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Publication 74, Closing Out Your Account(간행물 74-K, 계정 폐쇄)를 참조하십시오.

## **세금 신고서 작성 시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웹사이트를 참조하거나 CDTFA 사무소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CDTFA 웹사이트는 판매세 및 사용세 기초 과정(Basic Sales and Use Tax Class) 튜토리얼을 통해 지원을 제공합니다. 해당 과정은 캘리포니아주 전역의 CDTFA 사무소에서 주기적으로 제공됩니다. 해당 과정은 세금 신고서 작성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CDTFA 웹사이트에서 자주 묻는 질문(FAQ), 간행물, 법률 및 규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상단의 검색창에 주제를 입력하면 다양한 정보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CDTFA 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 문의도 가능합니다. 고객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CDTFA 직원이 세금 신고서의 올바른 작성 방법을 설명해 드립니다. 직원이 세금 신고서를 대신 작성하거나 신고할 금액의 판단을 위해 기록을 검토할 수는 없으나, 필요한 정보나 작성 방법은 설명해드릴 수 있습니다.

## **회계사가 세금 신고서를 준비하는 경우, 저를 대신하여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회계사가 귀하를 대신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양식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 온라인 서비스

CDTFA는 모든 납세자와 수수료 납부자에게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www.cdtfa.ca.gov](http://www.cdtfa.ca.gov))를 참조하십시오. 현재 제공되는 온라인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허가증, 면허 또는 계정 등록

- 판매자 허가증.
- 산림 벌채세.
- 캘리포니아주 연료 이동(Fuel Trip) 허가증.
- 연간 고정 요금 스티커.
- 담배 및/또는 토바코 제품의 인터넷 구매.

## 면허 갱신

- 담배 및 토바코 제품.
- 국제연료세 협정(IFTA).
- 유류사용세(연간 고정 요금표 스티커).

## 세금 신고서 제출

- 판매세 및 사용세.
- 자동차 연료.
- 국제연료세 협정(IFTA).
- 담배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

## 온라인 결제 옵션

- 은행 계좌에서 직접 결제(ACH).
- 신용카드 결제 - 판매세 및 사용세 신고 및 예납, 특별세 신고, 외상 매출금, 결제 감사, 수수료 지불, 거의 모든 세금 및 수수료 프로그램의 수수료 결제.
- 전자송금(EFT) -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결제 시작 가능.

## 온라인 경감 요청

- 기한 내 우편 발송에 대한 진술서.
- 세금/수수료 신고 기간 연장.
- 과징금 또는 이자 경감.
- 재해로 인한 과징금 및 이자 경감.
- 징수 비용 회수 수수료 경감.
- CDTFA 또는 DMV가 초래한 불합리한 오류 또는 지연으로 인한 이자 경감.

## 담배세 스탬프 프로그램

- 인가된 담배 유통업자는 담배세 스탬프를 주문하고 주문 상태를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

## 허가증/면허 확인

- 재판매 증명서에 기재된 판매자 허가증 번호가 유효한지 확인.
- 담배/토바코 면허가 유효한지 확인.
- 규제전자장치(CED)의 공급업체가 전자폐기물 수수료를 징수하고 송금하도록 등록되었는지 확인.
- 지하 저장 탱크 유지관리비 계정이 유효한지 확인.

## 분할 납부

- 연체된 금액을 모두 지불할 수 없는 경우 분할 납부 요청.

## CDTFA 모바일 서비스

- 은행 직불카드나 신용카드를 통해 CDTFA 계정에 대한 전자 결제를 수행 가능.
- 결제 기록 확인.
- 재판매 증명서, 담배/토바코 제품 면허 또는 전자폐기물 재활용 수수료 면허에 포함된 판매자 허가증 계정 번호의 상태 확인.
- [CDTFA 사무소](#) 지점, 주소 및 전화번호 검색.



## 사업의 인수, 매각 또는 중단

사업을 인수, 매각 또는 중단하는 경우 CDTFA에 연락해야 합니다.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 사업 매각자의 판매 허가증, 라이선스 또는 특별 세금 및 수수료 계정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매각하거나 중단하는 경우 계정을 폐쇄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체가 법인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 하단 정보와 더불어 본 챕터의 마지막 단락을 참조하십시오.

###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인수하는 사업체가 납부했어야 할 세금, 수수료, 추가 비용, 부과금(세금) 등을 지불하지 않으려면 CDTFA에 세금 및 수수료 청산을 요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세금 및 수수료 납부 요청을 완료하려면 [onlineservices.cdtfa.ca.gov](http://onlineservices.cdtfa.ca.gov)의 온라인 서비스 웹사이트로 가서 세금 및 수수료 납부 요청(Request a Tax and Fee Clearance) 기능을 선택하세요. 또는 귀하의 지역 [CDTFA 사무소](#)에 서면으로 세금 및 수수료 납부 확인서 발급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세금 및 수수료 납부 확인서 발급 요청 시 포함해야 할 정보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매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판매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사업체 주소. 구매하는 모든 장소 목록. 모든 사업장을 인수하는 경우, 모든 주소를 나열하는 대신 요청서에 그 사실을 명시하세요.
- 인수 금액이 기재된 매매 증권 또는 인수 계약서 사본.
- 에스크로 회사 이름 및 에스크로 번호(해당되는 경우).
- 사업 인수일.

사업을 인수하기 전 납세 확인서를 취득하지 않으면 이전 소유자가 미납한 세금이 있는 경우, 미납 금액(사업 인수 가격까지 포함, 여기에는 부채 인수도 포함)과 이자와 벌금을 포함하여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 및 세무법 [55191조](#) 또는 [규정 1702](#), 승계자 책임(Successor's Liability)을 참조하세요.

CDTFA에서 세금 및 수수료 청산에 대한 서면 요청을 접수한 후, 인수한 사업체가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드립니다. 또한, CDTFA는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납부하도록 현재 소유자에게 고지 또는 권고하거나, 잠재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위해 인수 금액에서 유보할 금액을 귀하에게 고지합니다.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지불 확인서(Certificate of Payment)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수할 사업체의 지점이 1곳 이상이며, 모든 지점을 인수하는 경우 필요한 납세 확인서는 1장입니다. 그러나 모든 지점이 아닌 1곳 이상의 지점을 인수하는 경우엔 각 지점에 대한 세금 및 수수료 납부 확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에스크로 회사를 통해 사업을 인수할 경우 회사에서 귀하를 대신하여 세금 및 수수료 납부 확인서를 요청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소유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으나 납세 확인서를 취득하지 않고 에스크로를 마감하는 경우 위에 언급한 것처럼 미납금에 대한 납부 의무를 진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 이전 소유자가 납부해야 할 미납금을 위해 일부 금액을 유보해야 합니까?

예. 상기 설명의 납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이전 소유자가 다음 중 하나를 제공할 때까지 사업 인수 금액 중 전 소유자가 CDTFA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유보해야 합니다.

- 모든 미납금 납부를 입증하는 CDTFA 영수증 또는
- 납부할 금액이 없음이 명시된 CDTFA 납세 확인서.

CDTFA에서 그 사업체에 대한 납세 확인서를 귀하에게 제공한 경우, 더 이상 미납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보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 **다른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 판매자 허가증을 새롭게 신청해야 합니까?**

예. 정식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새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모든 판매 허가 신청자에게 요구되는 동일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판매자 허가 취득](#)(Obtaining a Seller's Permit)을 참조하세요.

## **폐업 또는 사업 매각 시 CDTFA에 고지해야 합니까?**

예. 사업 매각 또는 폐업을 진행하려는 경우 서면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CDTFA에 고지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웹사이트 [www.cdtfa.ca.gov](http://www.cdtfa.ca.gov)에서 볼 수 있는 *Publication 74, Closing Out Your Account*([간행물 74-K, 계정 폐쇄](#))를 참조하세요.

CDTFA는 계정을 폐쇄하고 판매자 허가증을 취소합니다. 판매자 허가증 취득 시 현금 또는 이자가 붙는 보증금을 CDTFA에 제공한 경우, 납부할 세금이 남아 있는지 판단하여 보증금 전액 또는 미사용 부분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현재 우편 주소를 등록해야 합니다.

재고 상품 판매 시 CDTFA에 고지하지 않을 경우, 구매자 또는 승계자가 부담하는 이자와 벌금을 포함한 미지급 금액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규정 1699, 허가증\(Permits\)](#)을 참조하십시오.

주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경우 판매자 허가증을 사용하면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 **동업 관계 해지 시 CDTFA에 고지해야 합니까?**

예. 동업자 추가 또는 해지 시에는 CDTFA에 고지해야 합니다. 적시에 고지하면 동업 관계 변동 후 발생하는 세금, 과징금 및 이자 비용에 대해 사업체를 떠나는 동업자의 개인적 책임을 제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동업 관계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귀하의 계정을 담당하는 CDTFA 사무소에 서면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해당 정보를 신문에 게재하거나 다른 주정부 기관에 고지해도 CDTFA에 대한 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배우자나 등록된 동거인을 단독 소유주로 두고 사업체 운영에서 물러나는 경우 CDTFA에 고지해야 합니까?**

배우자 또는 등록된 동거인의 이름과 귀하의 이름이 판매자 허가증에 표시되어 있으며 사업체 소유권에서 귀하의 이름이 제거되는 경우 해당 변경 사항을 CDTFA에 서면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고지하지 않고 한 사람에게 사업체를 증여하는 법적 별거 또는 이혼 판결은 고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사업체 운영을 계속하는 당사자는 판매자 허가증을 다시 취득해야 합니다.

다음 정보는 법인 및 유한책임회사에 적용됩니다.

특정 상황에서 책임이 있는 개인이 법인, 유한책임회사 및 유한책임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 과징금 및 이자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규정 1702.5 책임이 있는 사람의 책임\(Responsible Person Liability\)](#), [1702.6 자격 정지된 법인\(Suspended Corporations\)](#)을 참조하십시오.

# 재판매 증명서 사용

## 재판매 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판매용으로 개인 유형자산을 구매하는 경우 판매 내역을 문서로 적절히 기록하면 해당 거래에 대한 판매세 또는 사용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공급업체는 해당 자산이 재판매 용도로 구매되었음을 증빙하는 재판매 증명서를 제공하도록 요청합니다. 하단 설명에 따라 증명서는 적시에 취득하고, 특정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재판매 증명서에 어떤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까?

증명서는 메모, 서신 또는 송장(memorandum) 등 어떤 형식으로든 작성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구매자의 이름 및 주소.
- 구매자가 보유한 판매자 허가증 번호(구매자가 판매자 허가증을 소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아래 참고 사항 참조).
- 구매할 자산에 대한 설명.
- 명시된 자산이 재판매 용도로 구매되는 것이라는 진술. 증명서에는 해당 자산이 ‘will be resold(재판매 예정)’ 또는 ‘for resale(재판매용)’임을 명시하는 용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nontaxable(비과세)’ 또는 ‘exempt(면세)’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서류의 날짜.
- 구매자 또는 구매자를 대신할 권한이 있는 사람의 서명.

요구되는 특정 재판매 증명서 양식은 없으나 CDTFA 웹사이트에서 [CDTFA-230 재판매 증명서 일반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거나 고객 서비스 센터를 통해 증명서 사본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30 페이지 참조). 또한 규정 1668에는 자동차 수리 및/또는 도색 업체를 위한 재판매 증명서 샘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 일부 사업체는 판매자 허가증을 소지할 필요가 없습니다(예: 사업체가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 실적이 없거나, 소매 판매 시 판매세 과세 대상이 아닌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자 허가증을 소지할 필요는 없으나 재판매 증명서를 사용하여 구매를 원하는 구매자에게 자산을 판매할 경우, 구매자는 재판매 증명서에 판매자 허가증을 소지하지 않았으며 허가증이 불필요한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 재판매 증명서를 사용하는 구매자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자산 재판매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재판매 증명서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는 재판매용, 일부는 과세 대상(예: 개인 용도)인 품목을 함께 구매할 경우 재판매용으로 구매하는 품목을 공급업체에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구매 품목이 재판매인지 개인 용도인지 불확실한 경우 판매세 환급액 또는 사용세를 공급업체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해당 품목을 사용하기 전에 재판매하게 되면 판매 신고 시 세금 신고서의 ‘세금을 납부했으나 사용 전 재판매된 구매 품목의 비용(Cost of Tax-Paid Purchases Resold Prior to Use)’을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구매 시마다 재판매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아니오. 한 공급업체로부터 여러 번 구매할 경우 해당 공급업체에 보관용으로 재판매 증명서를 1회만 제출하면 됩니다. 구매 주문서를 사용하는 경우, 구매하려는 자산을 설명하는 재판매 증명서의 항목에 ‘see purchase order (구매 주문서 참조)’라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공급업체로부터 구매 시 재판매용으로 구매할 품목을 구매 주문서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for resale(재판매용)’이라는 용어 사용). 재판매로 표시되지 않은 품목은 소매로 판매되므로 과세 대상입니다.

## 재판매 증명서를 수락하는 판매자에게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판매자는 항상 구매자 사업의 일반적 성격을 참조해야 합니다. 사업의 성격상 구매자가 구매한 자산을 재판매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면, 재판매 증명서가 사용되는 이유에 의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체에 대한 설명을 주유소(service station)라고 작성한 경우 주유소에서 정기적으로 판매되지 않는 소파 또는 이와 유사한 품목의 구매할 때 재판매 증명서를 수락해서는 안 됩니다. 구매자가 품목을 재판매할 예정이라 주장하는 경우,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특정 자산이 재판매용으로 구매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재판매 증명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판매는 과세 대상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자산이 재판매 이외의 목적으로 구매된다는 것을 인지하거나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있는 경우 재판매 증명서를 수락해서는 안 됩니다.

재판매 증명서는 적시에 받아야 합니다. 재판매 증명서를 받아야 하는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매자에게 자산 구매 가격을 청구하기 전 또는
- 정상적 청구 및 결제 주기 내 언제든 또는
- 구매자에게 자산을 인도하기 전 언제든

판매가 재판매용이며 과세 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려면, 다른 이로부터 수락한 재판매 증명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재판매용 판매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Publication 103, Sales for Resale\(간행물 103, 재판매를 위한 판매\)](#)를 참조하십시오.

## 판매자 허가증 번호가 현재 유효한 번호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 다른 판매자가 재판매용 구매 시 재판매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CDTFA에 수신자 부담 전화로 문의하거나 웹사이트 ([www.cdtfa.ca.gov](http://www.cdtfa.ca.gov))에 방문하여 판매자 허가증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30페이지](#)의 ‘인터넷’ 항목 참조).

## 재판매 증명서를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처벌을 받습니까?

예. 자산 구매 당시 통상적 사업 과정에서 재판매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으나 이를 구매하기 위해 재판매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재판매 증명서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액 및
-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한 이자(자산 구매 시점부터 계산).

또한 이로 인해 판매자 허가증이 취소될 수 있으며 다음 벌금 중 1가지 항목 또는 2가지 모두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적 이득을 위한 구매 건 또는 조세 회피를 위한 구매 건마다 세금의 10% 또는 \$500 중 더 큰 금액의 벌금 부과.
- 사기 또는 조세 회피 시도에 대한 벌금 25% 부과.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판매자에게 재판매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경범죄입니다. 각 위반은 \$1,000에서 \$5,000의 벌금 또는 카운티 교도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기록 보관

사업자는 세금을 정확히 납부하고 사업상 구매 및 판매를 설명해야 하므로, 적절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기록 보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규정 1698 기록\(Records\)](#) 및 [Publication 116 Sales and Use Tax Records\(간행물 116-K, 판매세 및 사용세 기록\)](#) 사본을 요청하십시오. 또한 특정 사업 유형별로 준비된 간행물에도 기록 보관과 관련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 다음 정보는 판매세 및 사용세 프로그램과 기타 CDTFA 세금 프로그램에 적용됩니다. 다른 정부 기관의 기록 보관 요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업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까?

예. CDTFA 직원이 다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과 관련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 판매세 및 사용세 신고의 정확성 확인.
- 세금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납부할 세금이 있는지 결정.

정확한 기록을 보관하지 못할 경우 부주의 또는 조세 회피 시도의 증거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떤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까?

판매세 및 사용세법에 따라 정확한 납세액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다음과 같은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 일반 회계 장부(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도 회계 장부로 포함 가능).
- 장부의 항목을 증빙하는 원본 항목의 증빙 서류(예: 청구서, 영수증, 송장, 구매 주문서, 계약서 또는 기타 서류 등).
- 세금 신고서를 준비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일정 또는 조서.

### 기록을 통해 입증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기록은 다음 사항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 개인 유형자산의 모든 판매 또는 대여(면세 항목으로 간주될 수 있는 판매 또는 대여 포함)를 통해 발생한 총 수익.
- 세금 신고서 제출 시 청구된 모든 공제 내역.
- 판매, 소비 또는 대여 목적으로 구매한 모든 개인 유형자산의 총 구매 가격.



## 사업 기록의 보존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판매세 및 사용세의 필수 기록을 더 빨리 파기할 수 있는 명확한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최소 4년 간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단, 기록을 더 오랫동안 보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의 경우 기록을 4년 이상 보존해야 합니다.

- 감사 중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견된 경우 10년 이상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 감사를 받는 경우 감사 기간에 적용되는 모든 기록을 4년 이상 기록을 보존해야 하더라도 감사 완료 시까지 보존해야 합니다.
- 또한 납부할 세금과 관련하여 CDTFA와 분쟁이 있을 경우 해당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관련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감사 또는 다른 판정의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환급을 청구할 경우 해당 문제가 해결되는 동안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 재판매 또는 면세 증명서를 받은 경우 이를 보관해야 합니까?

예. 청구된 비과세 판매를 입증하는 증명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을 보관하지 않으면 판매가 과세 대상이 아님을 달리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세금, 이자 및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CDTFA-230](#) 캘리포니아주 재판매 증명서(California Resale Certificate) 사본은 [웹사이트](#) 및 고객 서비스 센터 (1-800-400-7115, 문자 전송:711)에서 제공됩니다.

## CDTFA에서 관리하는 다른 세금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합니까?

CDTFA는 캘리포니아주의 판매세 및 사용세 외에도 다양한 세금과 수수료를 관리합니다.

*Publication 51,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Resource Guide to Tax Products and Services for Small Businesses* ([간행물 51-K](#), 캘리포니아주 조세·수수료 관리국 CDTFA 중소기업을 위한 과세 제품 및 서비스 자료 안내서)를 통해 CDTFA에서 관리하는 모든 세금 및 수수료 프로그램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간행물은 CDTFA 웹사이트([www.cdtfa.ca.gov](http://www.cdtfa.ca.gov)) 또는 고객 서비스 센터에서 제공됩니다.

하단 목록에 CDTFA에서 관리하는 기타 세금 및 수수료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등록을 사용하면 대부분의 특별세 및 수수료 프로그램 등록이 가능하며, 온라인 등록이 지원되는 프로그램에는 별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특정 프로그램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www.cdtfa.ca.gov](http://www.cdtfa.ca.gov))를 참조하거나 다음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십시오.

### 특별세 및 수수료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캘리포니아주 조세·수수료관리국 CDTFA), MIC:88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88

전화: 1-800-400-7115

팩스: 1-916-323-9297

- Aircraft Jet Fuel Tax(항공기 제트 연료세)\*
- 주류세
- California Tire Fee(캘리포니아주 타이어세)\*
- 대마초세(Cannabis Taxes)
- 아동 납중독 예방세(Childhood Lead Poisoning Prevention Fee)
- Cigarette and Tobacco Products Licensing Program(담배 및 토바코 제품 면허 발급 프로그램)\*
- Cigarette and Tobacco Products Tax(담배 및 토바코 제품세)\*
- Diesel Fuel Tax(디젤 연료세)\*
- Electronic Waste Recycling Fee(전자폐기물 재활용 수수료)\*
- Emergency Telephone Users Surcharge(긴급 통신 사용자 추가세)\*
- Energy Resources Surcharge(에너지 자원 추가세)\*
- 유해 폐기물 처리세(Hazardous Waste Disposal Fee)
- Hazardous Waste Environmental Fee(유해 폐기물 환경세)\*
- 유해 폐기물 시설세(Hazardous Waste Facility Fee)
- Hazardous Waste Generator Fee(유해 폐기물 제너레이터세)
- Integrated Waste Management Fee: Solid Waste & Wood Waste(복합 폐기물 관리세: 고형 폐기물 및 목재 폐기물)
- 납산 배터리 수수료
- Lumber Products Assessment Fee(목재 제품 평가세)\*
- 해양 침입종(평형수)수수료(Marine Invasive Species (Ballast Water) Fee)
- Motor Vehicle Fuel Tax(자동차 연료세)\*
- Natural Gas Surcharge(천연가스 추가세)\*
- Occupational Lead Poisoning Prevention Fee(직업상 납중독 예방세)\*
- Oil Spill Response, Prevention, and Administration Fees(기름 유출 대응, 예방 및 관리세)\*
- Prepaid Mobile Telephony Services (MTS) Surcharge(선불 휴대폰 통신 서비스(MTS) 추가세)
- 목재 수율세
- Underground Storage Tank Maintenance Fee(지하 저장 탱크 관리세)\*
- Water Rights Fee(수자원 이용세)

## 차량 운송 사무소(Motor Carrier Office)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캘리포니아주 조세·수수료관리국 CDTFA), MIC:65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65  
전화: 1-800-400-7115

- Diesel Fuel Tax(디젤 연료세, 버스 회사 및 정부 기관 제외)\*
- International Fuel Tax Agreement(IFTA: 국제연료세 협정)\*
- Interstate User Diesel Fuel Tax(DI: 주간 사용자 디젤 연료세)\*
- Use Fuel Tax(유류 사용세)\*

## 추가 정보

추가 정보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아래 나열된 리소스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고객 서비스 센터

**1-800-400-7115 (TTY:711)**

고객 서비스 센터 직원은 주 지정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30~오후 5:00(태평양 표준시) 사이에 근무합니다. 영어 외 다른 언어로도 지원이 제공됩니다.

### 사무소

CDTFA 웹사이트

([www.cdtfa.ca.gov/office-locations.htm](http://www.cdtfa.ca.gov/office-locations.htm))에서 모든 사무소 위치가 포함된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 고객 서비스 센터 1-800-400-7115(문자 전송:711)번으로 문의하세요.

### 인터넷

[www.cdtfa.ca.gov](http://www.cdtfa.ca.gov)

CDTFA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법률이 사업에 적용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추가 정보(예: 법률, 규정, 양식, 간행물, 산업 가이드 및 정책 안내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웹사이트에서 판매자 허가증 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허가증, 면허 또는 계정 확인\(Verify a Permit, License, or Account\)](#) 참조).

다국어 버전의 간행물은 CDTFA 웹사이트 [www.cdtfa.ca.gov/formspubs/all-forms-and-publications.htm](http://www.cdtfa.ca.gov/formspubs/all-forms-and-publications.htm)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시작할 때 유용한 다른 리소스는 California Tax Service Center (캘리포니아주 세무 서비스 센터)([www.taxes.ca.gov](http://www.taxes.ca.gov))입니다.

### 세금 정보 보고서

분기별로 제공되는 *Tax Information Bulletin*(TIB;세금 정보 보고서)에는 특정 유형의 거래 시 법률 적용에 관한 글, 새롭게 개정된 간행물 소식 및 기타 관련 글이 실려 있습니다. 웹사이트([www.cdtfa.ca.gov/taxes-and-fees/tax-bulletins.htm](http://www.cdtfa.ca.gov/taxes-and-fees/tax-bulletins.htm))에서 최신 TIB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DTFA 업데이트](#) 이메일 리스트에 등록하면 TIB 시간이 웹사이트에 게시될 때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무료 강의 및 세미나

CDTFA는 납세 신고서와 관련한 개별지도를 포함한 판매세 및 사용세 기본 사항에 관한 무료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강의는 다국어로 제공됩니다. 특정 강의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시려면 지역 사무소로 문의하십시오.

### 서면 세금 자문

보안을 위해 세금 자문은 서면으로 받을 것을 권장드립니다. CDTFA에서 거래와 관련하여 잘못된 서면 자문을 제공받았고, 귀사가 해당 자문을 합리적으로 신뢰하여 세금을 적절히 납부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거래에 부과된 세금, 과태료 또는 이자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를 받으려면 자문 요청이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자문이 적용되는 납세자의 신원이 확인되고, 거래 관련 사실과 상황이 모두 설명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조세·수수료 정보에 대한 서면 자문을 구하려면 CDTFA 웹사이트([www.cdtfa.ca.gov/email](http://www.cdtfa.ca.gov/email))에 방문하여 자문 요청을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해당 요청을 서신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목재 제품 평가세 선불 휴대폰 통신 서비스(MTS) 추가세를 포함한 판매세 및 사용세의 일반 정보를 받아보려면 다음 주소로 요청해 주십시오. Audit and Information Section, MIC:44,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44.

기타 모든 특별세 및 수수료 프로그램에 대한 서면 자문은 다음 주소로 요청해 주십시오. Program Administration Branch, MIC:31,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31.

### 납세자 권리 보호

납세자로서의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거나 일반적 경로(예: 관리자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Publication 70 Understanding Your Rights as a California Taxpayer\(간행물 70-K, 캘리포니아주 납세자 권리의 이해\)](#)를 참조하거나 1-888-324-2798로 연락하여 [Taxpayers' Rights Advocate Office\(납세자 권리 보호 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팩스 번호는 1-916-323-3319입니다.

원하는 경우 다음 주소에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Taxpayers' Rights Advocate\(납세자 권리 옹호자\)](#), MIC:70,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70.

소셜 미디어 팔로우



간행물 73-K | 2024년 11월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캘리포니아 조세 수수료 관리국 CDTFA) 우편 주소: P.O. BOX 942879 • SACRAMENTO, CA 94279-0001